



안 산 세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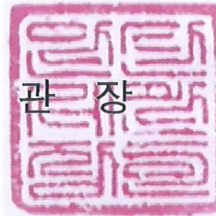
수신 이스트페이사우스코리아(대표: 이승빈) 귀하
(경유)

제목 환전영업자 등록 신고 처리결과 통보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환전업무의 등록)에 따라 환전영업자 등록 신고를 수리하고, 붙임과 같이 환전영업자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붙임 : 환전영업자등록증(이스트페이사우스코리아) 1부. 끝.

안 산 세 관 장



관세주사보

이민희

주무관

서준수

과장

전결 2025. 7. 3.
채경식

협조자

시행 조사심사과-1843

(2025. 7. 3.)

접수

우 1536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58 (선부동)

/ <http://incheon.customs.go.kr>

전화번호 031-8085-3835

팩스번호 031-410-3613

/ mhlee76@korea.kr

/ 비공개(7)

청렴한 당신, 행복한 국민, 신뢰받는 관세청

환전영업자 등록증

Exchange Broker Registration Certificate

- 1. 환전영업자명 : 주식회사 이스트페이사우스코리아
(Exchange Broker Name)
- 2. 대 표 자 : 이승빈
(Representative)
- 3. 소 재 지 :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5 (장현동) 2층 213호
(Location)
- 4. 개업(설립)일 : 2025 년 07 월 03 일
(Opening Date)

- 5. 허 용 업 무 : 일반
(Permitted Business)

뒷면 「환전업무 구분 및 허용업무 범위」 참조
 ※ 환전업무 구분에 따라 허용업무는 변경될 수 있음.

Please refer to the exchange business classification and permitted business scope on the back of this page.
 Exchange Business Classification and Permitted Business Scope : The permitted business may be changed depending on the exchange business classification.

- 6. 업 무 내 용 :
(Business contents)

※ 환전영업자는 허용 업무(연번5.) 및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환전영업자의 업무)에 따른 환전장부 기록·제출 등 업무를 수행함
 The exchange broker shall perform the business specified in the Article 2-29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Regulation(Business of Exchange Brokers), such as submitting exchange ledgers under the Article 20(1)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외국환거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환전영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This certifies that this exchange broker has been registered as such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8, Article 1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and the Article 2-28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Regulation.

2025 년 07 월 03 일

안 산 세 관 장



안산 Regional Commissioner

第 014A00316号

兩替營業者登録証

货币兑换营业商营业执照

1. 兩替營業者名 : 주식회사 이스트페이사우스코리아
(货币兑换营业商)
2. 代表者 : 이승빈
(代表人)
3. 所在地 :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5 (장현동) 2층 213호
(所在地)
4. 開業 (設立) 日 : 2025 년 07 월 03 일
(开业(创立)日)
5. 許可業務 : 일반
(许可业务)

※ 兩替業者区分により許可業務は変更される場合がある
(裏面の「兩替業務の区分及び許可業務の範囲」を参照)。

根据货币兑换业务的分类, 许可业务会有变动。(请参考背面的《货币兑换业务分类以及许可业务范围》)

6. 業務内容

业务内容

※ 兩替營業者は許容業務(連番5.)の範囲内で「外国為替取引法」第20条 第1項
による兩替帳簿提出等「外国為替取引規定」第2-29条(兩替營業者の業務)を遂行する。

货币兑换营业商在许可业务(编号5)的范围内, 根据《外汇交易法》第20条第1项
提交货币兑换账本等, 执行《外汇交易规定》第2-29条(货币兑换营业商的业务)。

「外国為替取引法」第8条、同法施行令第15条及び「外国為替取引規定」
第2-28条により、上記のように兩替事業者として登録したことを証明する。

根据《外汇交易法》第8条、相关法律施行令第15条以及《外汇交易规定》第2-28条,
证明以上货币兑换营业商已登录。

2025 年 07 月 03 日

안산 税 関 長

안산 海 关 关 长



환전업무 구분 및 허용업무 범위

□ 환전업무별 구분 및 업무구분에 따른 허용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각 환전업무는 개별적으로 수행 또는 겸업할 수 있다.

1. 일반 환전영업자 : ①,②,④
2. 카지노 환전영업자 : ①,②,③,④
3. 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 : ⑤
4. 온라인 환전영업자 : ⑥

[환전영업자 허용 업무]

- ①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 ② 비거주자에 대한 재환전(최근 입국일 이후 외국환 매각실적 범위내)
- ③ 비거주자 및 외국인에 대한 재환전(당해 환전영업자의 카지노에서 획득한 금액 또는 미사용 금액)
- ④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매각(환전장부를 전산 관리하는 일반 환전영업자는 미화 4천달러 이하)
- ⑤ 등록된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환전거래로서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 달러 이하 외국통화 등의 매입 또는 매각
- ⑥ 온라인(인터넷, 앱 등)을 이용한 환전거래로서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 달러 이하 외국통화 등의 매입 또는 매각

□ 환전업무 중 2가지 이상의 업무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별 허용업무를 모두 포함한 범위를 허용업무로 한다.

< 예시 > 일반 및 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를 겸업하는 경우 허용업무 범위

: 일반 환전영업자 허용업무(①,②,④)와 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 허용업무(⑤)를 합친 ①,②,④,⑤가 된다.